

수원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가단550251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3. 28.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248,929원 및 그중 351,819,552원에 대하여 2023.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

판사 진현섭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채권자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득하여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고, 소외 유한회사 D 은 채권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채무자는 위 계약에 연대보증 한 자입니다.

2. 소외 유한회사 D 은 채권자와 2022년 06월 23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는 이 대출계약에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아 래 -

대출원금: 금 400,000,000원

이 자 율: 연 9.9%

연체이자율: 연 12.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상환기간: 60개월

3. 기한이익의 상실

가.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단 분할상환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채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채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등 (여신거래기본약관 참조)

나. 위 계약에 따라 소외 유한회사 D 은 2022년 06월 29일 채권자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였으나 원리금의 상환이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바, 아래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 할 의무가 있으며, 채무자는 소외 유한회사 D 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4. 채권내역 (기준일 2023년 06월 08일)

미회수 원금 (A)	351,819,552 원
이자/연체이자(B)	8,429,377 원
가지급 비용(독촉절차 비용 제외)(C)	0 원
총계 (A+B+C)	360,248,929 원

5. 결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60,248,929 원 및 이 금원 중 금 351,819,552 원에 대하여 2023년 06월 09일부터 다 갚을 때 까지 약정지연배상금인 연 1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부득이 본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6. 회사의 지정 소재지 법원의 관할권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나, 지점의 경우도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회사이고 계약자체가 지점에서 이루어진 경우 의무이행지를 지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467조 2항 단서) 채권자의 지정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무이행지 관할(민사소송법 8조)).

따라서 이 사건 청구채권은 관리지점이 귀원 관할인 경인센터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채권의 이행지는 경인센터이며, 이 지점이 귀원 관할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귀원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